

# 비용추계 사례집

2021년 의원발의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목 차

<b>I. 조례안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b> .....	1
1. 조례안 비용추계 개념 .....	3
2. 조례안 비용추계 근거규정 .....	3
3. 조례안 비용추계 처리절차 .....	4
4. 2021년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 .....	5
5. 단가 및 기준정보 .....	7
<b>II. 위원회별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b> .....	11
<b>1. 의회운영위원회</b> .....	23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조례안 .....	23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26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	27
<b>2. 기획경제위원회</b> .....	30
1.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2.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4
3.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	37
4.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1
<b>3. 행정문화위원회</b> .....	44
1.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44
2.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8
3.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	52
4.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5

<b>4. 복지환경위원회</b> .....	61
1.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1
2.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64
3.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	70
4.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4
<b>5. 농수산해양위원회</b> .....	78
1.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	78
2.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81
3.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83
4.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6
<b>6. 안전건설소방위원회</b> .....	89
1.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9
2.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2
3. 충청남도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	96
4.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9
<b>7. 교육위원회</b> .....	101
1.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1
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4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8
4.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11

<b>Ⅲ. 위원회별 미첨부사유서 2호·비대상사유서 작성 사례</b> .....	115
1. 의회운영위원회 .....	126
2. 기획경제위원회 .....	127
3. 행정문화위원회 .....	131
4. 복지환경위원회 .....	134
5. 농수산해양위원회 .....	137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141
7. 교육위원회 .....	144
<b>◆ 부록</b> (조례안비용추계 관련 규정) .....	147



# I

## 조례안 비용추계 개요 및 현황

1. 조례안 비용추계 개념
2. 조례안 비용추계 근거규정
3. 조례안 비용추계 처리절차
4. 2021년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
5. 단가 및 기준정보



## 1. 조례안 비용추계 개념

- 비용추계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말함
  - 의안이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재정지출 및 수입의 증감액,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여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됨



## 2. 조례안 비용추계 근거규정

- 2020년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가 시행(20.6.10.)됨에 따라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는 의안에 대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함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21. 8. 3.)을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및 업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른 조례안 비용추계 제도 근거 마련

### 3. 조례안 비용추계 처리절차

#### 비용추계 절차

-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sup>1)</sup>에서 상임위원회별 담당자가 비용추계서 작성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비용추계서와 미첨부사유서(1·2호)로 구분하여 비용을 추계함
  - 비용추계서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이상인 경우, 의안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행일로부터 5년간 추계하여 작성
  - 미첨부사유서
    - ▶ 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 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인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대상사유서 :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결의안이나 건의안·청원 등의 의안, 단순체계·자구 수정과 같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 또는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
- 비용추계서 회신
  - 비용추계 결과를 공문으로 의원·위원회에 회신

#### 비용추계 처리기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2호는 14일 이내 처리(「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
- 다만 의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 담당부서(예산정책담당관)가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1) 2021.1.1.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 변경(예산분석담당관→예산정책담당관)



## 4. 2021년 조례안 비용추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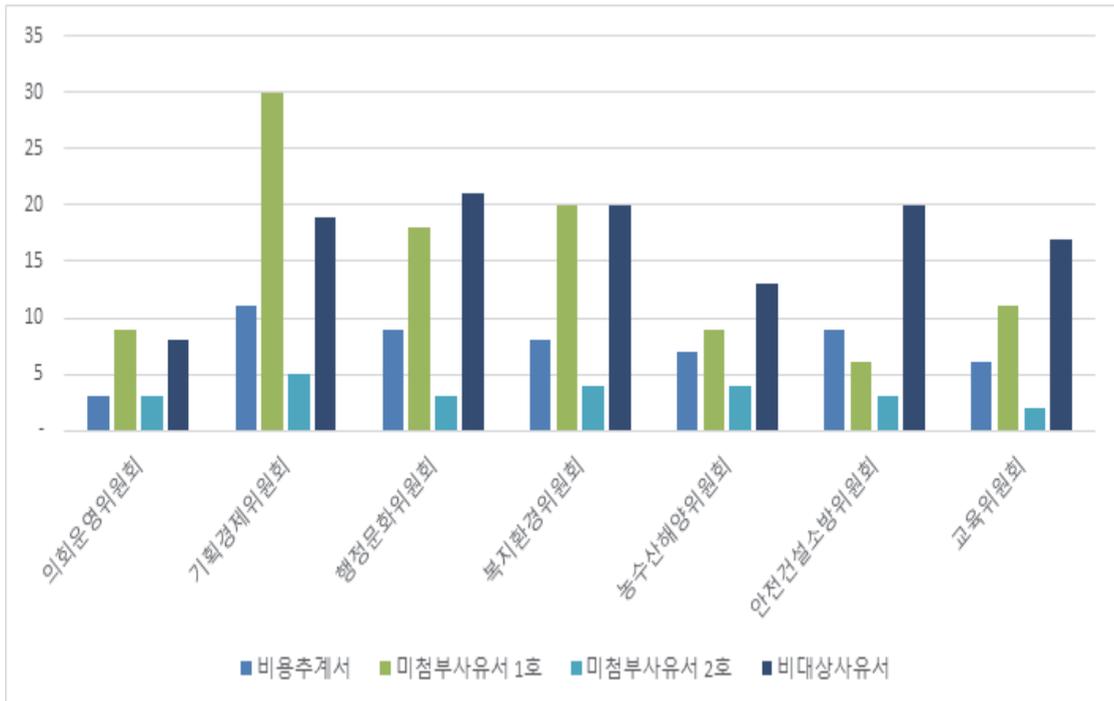
### 비용추계 회신 실적

- 예산정책담당관이 작성하여 제공하는 조례안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2호, 비대상 사유서로 나눌 수 있음
  -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사유서 1호’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및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대하여 추계
  - ‘미첨부사유서 2호’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이며, ‘비대상사유서’는 단순체계·자구수정과 같이 명백히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 또는 비용을 수반한 기 시행중인 사업이 포함된 의안
- 2021년에 실시한 비용추계는 총 298건이며, 그 중 비용추계서가 53건, 미첨부사유서는 127건(1호 103건, 2호 24건), 비대상사유서는 118건임
  -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기획경제위원회 65건, 복지환경위원회 52건 등 총 298건 처리

2021년 비용추계 실적('21.12.31.기준)

(단위 : 건)

소관상임위원회	계	추계결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호	미첨부사유서 2호	비대상사유서
계	298	53	103	24	118
의회운영위원회	23	3	9	3	8
기획경제위원회	65	11	30	5	19
행정문화위원회	51	9	18	3	21
복지환경위원회	52	8	20	4	20
농수산해양위원회	33	7	9	4	13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8	9	6	3	20
교육위원회	36	6	11	2	17



## 5. 단가 및 기준정보

구분	기준																																	
인건비	단순 인건비	○ 2021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20-365호) - 시급 10,200원, 월 환산액 2,131,800원																																
		○ 2021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10호) - 시급 8,720원, 월 환산액 1,822,480원																																
		○ 2021년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지급기준 및 지급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급</td> <td>-1개월 이상 근무: 월 1,822,480원 -1개월 미만 일할 계산</td> <td></td> </tr> <tr> <td>정기상여금</td> <td>200,000원</td> <td>분기별</td> </tr> <tr> <td>명절상여금</td> <td>200,000원</td> <td>설·추석</td> </tr> <tr> <td rowspan="3">약정 수당</td> <td>교통보조비</td> <td>50,000원</td> <td>매월</td> </tr> <tr> <td>정액급식비</td> <td>130,000원</td> <td>매월</td> </tr> <tr> <td>생활임금 보전수당</td> <td>-약정수당 지급액*(근무일수/1개월 일수)</td> <td>매월</td> </tr> <tr> <td rowspan="3">법정 수당</td> <td>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td> <td>-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td> <td>지급 사유 발생시</td> </tr> <tr> <td>주휴(유급) 수당</td> <td>-1주 40시간이상: 8시간(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td> <td>1주 소정근로일 수 개근 시</td> </tr> <tr> <td>연차(유급) 수당</td> <td>-1년간 80%이상 출근: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통상일급*연차 미사용일수</td> <td>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td> </tr> </tbody> </table>	구분	지급기준 및 지급액	비고	기본급	-1개월 이상 근무: 월 1,822,480원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정기상여금	200,000원	분기별	명절상여금	200,000원	설·추석	약정 수당	교통보조비	50,000원	매월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생활임금 보전수당	-약정수당 지급액*(근무일수/1개월 일수)	매월	법정 수당	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사유 발생시	주휴(유급) 수당	-1주 40시간이상: 8시간(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	1주 소정근로일 수 개근 시	연차(유급) 수당	-1년간 80%이상 출근: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통상일급*연차 미사용일수	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
		구분	지급기준 및 지급액	비고																														
		기본급	-1개월 이상 근무: 월 1,822,480원 -1개월 미만 일할 계산																															
		정기상여금	200,000원	분기별																														
		명절상여금	200,000원	설·추석																														
		약정 수당	교통보조비	50,000원	매월																													
			정액급식비	130,000원	매월																													
생활임금 보전수당	-약정수당 지급액*(근무일수/1개월 일수)		매월																															
법정 수당	시간외·휴일· 야간근무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 사유 발생시																															
	주휴(유급) 수당	-1주 40시간이상: 8시간(법정 1일 근무시간)*시급	1주 소정근로일 수 개근 시																															
	연차(유급) 수당	-1년간 80%이상 출근: 15일 유급휴가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 통상일급*연차 미사용일수	최종 근로계약 종료 시																															
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 3의2, 5, 6, 10 등] -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연구직, 경찰 등 공무원 봉급표																																	
사회복지 종사자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직, 일반직, 의료직, 사무직, 관리직, 기타직종 등																																	

구분		기준					
인건비	산업별 임금	○ (사)한국물가정보( <a href="https://www.kpi.or.kr/">https://www.kpi.or.kr/</a> ) 참고 - SW기술자 노임단가, 감리원 임금, 측량기술자임금, 제조부문 생산직 직종 평균조사 노임 등					
	사회보험	○ 4대보험 포털사이트( <a href="https://www.4insure.or.kr/">https://www.4insure.or.kr/</a> ), 근로복지공단( <a href="https://www.kcomwel.or.kr/">https://www.kcomwel.or.kr/</a> ) 참고					
	학술연구 용역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5))					
		등급	월 임금('20)	월 임금('21)	비고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월 3,245,879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것			
연구원		월 2,476,514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1,642원	월 1,247,850원					
운영비	강사수당	○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일반강의, 퍼실리테이터(FT), 평가위원, 자문 및 심사수당					
	식비	○ 2021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구분	지급액		비고		
	식비	1인 1식 8,000원					
숙박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구분	지급액		비고			
	숙박비	실비(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50,000원)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4] - 국내여비 [별표2]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식비 (1일당)
지급액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20,000원
- 국외여비 [별표3~4]							
	구분	지급액		비고			
	국외 항공운임	2등석 정액					
	국외여비	[별표4] 참고					

구분		기준							
운영비	회의 참석수당	○ 2021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구분	지급액					비고	
		기본료(2시간 이내)	100,000원						
	초과료(2시간 초과)	50,000원					시간 관계없음		
	임차료	○ 면적규모는 직원 1인당 38㎡(국회 예산정책처 기준정보) 기준으로 센터 인원 대비 면적을 산정 ○ 단가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a href="https://www.r-one.co.kr/">https://www.r-one.co.kr/</a>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참고 - ㎡당 월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							
자산취득비		○ 조달청 종합쇼핑몰( <a href="http://shopping.g2b.go.kr/">http://shopping.g2b.go.kr/</a> ) 참고							
소비자물가지수		○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통계청)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비자물가지수	1.3	0.7	1.0	1.9	1.5	0.4	0.5
기타		○ 통계청( <a href="http://kostat.go.kr/">http://kostat.go.kr/</a> ) ○ 국가통계포털( <a href="https://kosis.kr/">https://kosis.kr/</a> ) ○ 나라장터( <a href="http://www.g2b.go.kr/">http://www.g2b.go.kr/</a> ) ○ 중소기업중앙회( <a href="https://www.kbiz.or.kr/">https://www.kbiz.or.kr/</a> )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a href="http://www.minimumwage.go.kr/">http://www.minimumwage.go.kr/</a> ) ○ 국민건강보험 주요통계( <a href="https://nhiss.nhis.or.kr/">https://nhiss.nhis.or.kr/</a> ) ○ 고용노동통계( <a href="http://laborstat.moel.go.kr/">http://laborstat.moel.go.kr/</a> ) ○ 교육통계서비스( <a href="https://kess.kedi.re.kr/">https://kess.kedi.re.kr/</a> )							

※ 출처 :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12.12.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록), 2017년 의원입법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경기도의회), 법안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2020.6. 한국재정학회),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심의 시 원가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 용역(2020.11. 공공재정연구원) 등 내용 재정리



## II

# 위원회별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1. 의회운영위원회
2. 기획경제위원회
3. 행정자치위원회
4. 복지환경위원회
5. 농수산해양위원회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7. 교육위원회



## 1 비용추계서 목록

(기간 : 2021.1.1. ~ 2021.12.31.)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	21. 1.19.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	21. 1.28.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기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3	21. 2. 1.	충청남도 아바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	21. 2. 8.	충청남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최훈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	21. 2. 8.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6	21. 2.17.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7	21. 2.19.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8	21. 2.22.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9	21. 2.2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도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10	21. 2.25.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1	21. 3. 8.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재의뢰)	장승재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12	21. 3. 8.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3	21. 3.19.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4	21. 4. 6.	충청남도 사람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5	21. 4. 8.	충청남도 인구정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16	21. 4.27.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7	21. 5. 7.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교육위원회
18	21. 5. 7.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9	21. 5.11.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	21. 5.1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도물 정수장치 설치 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21	21. 5.17.	충청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2	21. 5.24.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3	21. 5.28.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24	21. 6.14.	충청남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25	21. 6.14.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6	21. 6.15.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김기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7	21. 6.21.	충청남도과 지역대학 간 상생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8	21. 6.22.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9	21. 7.23.	충청남도 국약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30	21. 7.26.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1	21. 7.26.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33	21. 7.27.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34	21. 7.28.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5	21. 7.29.	충청남도 주거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6	21. 8. 3.	충청남도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37	21. 8. 5.	충청남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8	21. 8. 6.	충청남도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명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 안 명	발의자	소관 위원회
39	21. 8. 9.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	조철기 의원	교 육 위 원 회
40	21. 9. 1.	충청남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행 정 문 화 위 원 회
41	21. 9. 2.	충청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농 수 산 해 양 위 원 회
42	21. 9. 3.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 전 건 설 소 방 위 원 회
43	21. 9. 16.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 획 경 제 위 원 회
44	21. 9. 27.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행 정 문 화 위 원 회
45	21. 9. 29.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 지원금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안 전 건 설 소 방 위 원 회
46	21. 10. 5.	충청남도교육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교 육 위 원 회
47	21. 10. 6.	충청남도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복 지 환 경 위 원 회
48	21. 10. 7.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오인환 의원	복 지 환 경 위 원 회
49	21. 10. 13.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 수 산 해 양 위 원 회
50	21. 10. 13.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 수 산 해 양 위 원 회
51	21. 11. 1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 회 운 영 위 원 회
52	21. 12. 8.	충청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최 훈 의원	안 전 건 설 소 방 위 원 회
53	21. 12. 10.	충청남도 시민경찰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 정 문 화 위 원 회
54	21. 12. 23.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석곤 의원	교 육 위 원 회

## 2 미첨부사유서 1호 목록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1	21. 1.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	21. 1. 6.	충청남도 금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3	21. 1. 6.	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4	21. 1. 6.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5	21. 1.12.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6	21. 1.20.	충청남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7	21. 1.27.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8	21. 2. 3.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재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9	21. 2. 4.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0	21. 2. 5.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11	21. 2. 8.	충청남도 장애인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2	21. 2. 9.	충청남도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3	21. 2. 9.	충청남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4	21. 2.17.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5	21. 2.18.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16	21. 2. 19.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17	21. 2. 22.	충청남도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안	장승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18	21. 2. 22.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19	21. 2. 23.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0	21. 3. 3.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승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1	21. 3. 5.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2	21. 3. 5.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3	21. 3. 9.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4	21. 4. 8.	충청남도 장애인 보조견 생활 이용 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25	21. 4. 21.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6	21. 4. 21.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7	21. 4. 21.	충청남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8	21. 4. 26.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9	21. 4. 26.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홍기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30	21. 4. 26.	충청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31	21. 4. 26.	충청남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32	21. 4.27.	충청남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3	21. 4.29.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공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4	21. 4.30.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35	21. 5. 3.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6	21. 5. 6.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7	21. 5.11.	충청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8	21. 5.11.	충청남도 고독사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재요청)	홍기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39	21. 5.12.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0	21. 5.14.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교육위원회
41	21. 5.14.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	유병국 의원	교육위원회
42	21. 5.14.	충청남도 한혈 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3	21. 5.14.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교육위원회
44	21. 5.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안	조철기 의원	교육위원회
45	21. 5.17.	충청남도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국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6	21. 5.17.	충청남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오인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47	21. 5.18.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48	21. 5.21.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요청)	이공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49	21. 5.25.	충청남도 도청이전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0	21. 5.25.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1	21. 6.17.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철상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52	21. 6.21.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53	21. 6.21.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4	21. 6.21.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김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55	21. 6.21.	충청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56	21. 6.23.	충청남도 노동자직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57	21. 6.24.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안	전익현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58	21. 7. 2.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안장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59	21. 7. 2.	충청남도 도민참여 기본조례안	안장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60	21. 7. 7.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61	21. 7.22.	충청남도 기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62	21. 7.22.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안	윤철상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63	21. 7.23.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선영 의원	교육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64	21. 7.23.	충청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65	21. 7.26.	충청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이종화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66	21. 7.26.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67	21. 7.26.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철기 의원	교육위원회
68	21. 7.27.	충청남도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69	21. 7.27.	충청남도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0	21. 7.27.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공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1	21. 7.28.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김영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2	21. 7.29.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73	21. 7.29.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4	21. 7.29.	충청남도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5	21. 7.30.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홍재표 의원	교육위원회
76	21. 8. 2.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77	21. 8. 9.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78	21. 8. 9.	충청남도 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9	21. 8. 9.	지역국립대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80	21. 8.11.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1	21. 8.11.	충청남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82	21. 8.25.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83	21. 9. 1.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4	21. 9.13.	충청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5	21. 9.16.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86	21. 9.16.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김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7	21. 9.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88	21. 9.24.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병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9	21. 9.27.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90	21.10. 5.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91	21.10. 5.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여운영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92	21.10. 6.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김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93	21.10. 6.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김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94	21.10. 7.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홍재표 의원	교육위원회
95	21.10.19.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요구의원	소관위원회
96	21.11.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제안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97	21.11.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98	21.11. 8.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99	21.11. 8.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홍기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00	21.11.22.	충청남도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101	21.11.22.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102	21.11.23.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03	21.12.17.	충청남도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1. 의회운영위원회

## 1.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의회 의정활동 사항을 도민에게 전달하고자 발행중인 도의회 의정소식지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여 발행체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소식지 제작 시 도민 등의 참여 확대와 양방향 소통형 소식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임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제정조례안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제9조(도민참여 등), 제10조(배부)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명칭), 제4조(발행인), 제5조(계재내용),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운영)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의회 소식지 발행·배부 비용
- 도민참여 원고료, 보상금 등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 제9조, 제10조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의 '차별화된 의정홍보 간행물 제작 계획' 자료를 활용
  - (현행) 분기별(연4회) → (2021년 하반기) 격월(연6회) → (2022년 이후) 매월(연12회) 의정소식지 발행횟수를 확대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805,000천원(연평균 161,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회 소식지 발행비용 (안 제3조)		44,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652,000
	원고료, 보상금 등 비용 (안 제9조)		3,000	12,000	12,000	12,000	12,000	51,000
	의회 소식지 배부비용 (안 제10조)		6,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2,000
	소계(b)		53,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05,000
□ 총 비용(b-a)			53,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05,000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의회 소식지 발행·배부 비용
- 도민참여 원고료, 보상금 등

나.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805,000천원(연평균 161,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의회소식지운영비용)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회 소식지 발행비용 (안 제3조)	44,000	152,000	152,000	152,000	152,000	652,000
	원고료, 보상금 등 비용 (안 제9조)	3,000	12,000	12,000	12,000	12,000	51,000
	의회 소식지 배부비용 (안 제10조)	6,000	24,000	24,000	24,000	24,000	102,000
	소계(b)	53,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05,000
□ 총 비용(b-a)		53,000	188,000	188,000	188,000	188,000	805,000

-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21년 변경(추가)		'22년 변경(추가)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합계	100,000		53,000		188,000	
의회 소식지 발행비용 (안 제3조)	88,000	2,220원 × 9,900부 × 4회	44,000	2,220원 × 9,900부 × 2회	152,000	'22년 예산안-당초 =240,000천원-88,000천원 = (2,000원 × 10,000부 × 12회) - 88,000천원
원고료, 보상금 등 비용 (안 제9조)	-	-	3,000	1,000천원 × 3회	12,000	1,000천원 × 12회
의회 소식지 배부비용 (안 제10조)	12,000	3,000천원 × 4회	6,000	3,000천원 × 2회	24,000	'22년 예산안-당초 =36,000천원-12,000천원 = (3,000천원 × 12회) - 12,000천원

## 2.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임무 규정(안 제2조)
  - 홍보대사 위촉, 홍보대사 해촉(안 제3조~제4조)
  - 예우 및 보상(안 제5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5조(예우 및 보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임무), 제3조(위촉), 제4조(해촉), 제6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00,000천원으로 연평균 20,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예우 및 보상)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 홍보대사 운영 검토보고’ 자료를 활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00,000천원(연평균 2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홍보대사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홍보대사 운영비 (안 제5조)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소계(b)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총 비용(b-a)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 홍보대사 운영비 ≙ 1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홍보대사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1~2025년)

- 연간비용 ≙ 20,000천원

= 1회당 홍보대사 활동 경비 × 활동 횟수

= 2,000천원 × 10회

**3.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의정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 의원회별 비용추계서

- 소송비 지원의 근거 및 기준(안 제4조)
- 소송비 환수의 근거 및 기준(안 제5조)
-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 제9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 제4조(소송비용 지원),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소송비용 지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5조(소송비 등 환수),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비밀유지의무)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8,400천원(연평균 3,6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400천원으로 연평균 3,6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의 운영)는 위원장 포함 총 7명(외부인원)으로 구성 및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8,400천원(연평균 3,6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 운영비)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 등 (안 제6조, 제7조, 제8조)	3,680	3,680	3,680	3,680	3,680	18,400	
	소계(b)	3,680	3,680	3,680	3,680	3,680	18,400	
□ 총 비용(b-a)		3,680	3,680	3,680	3,680	3,680	18,4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소 계	3,680	
참석수당	2,800	200천원 × 외부위원 7명 × 연 2회 = 2,800천원
여 비	280	20천원 × 외부위원 7명 × 연 2회 = 280천원
책자 인쇄 및 기타운영비	600	20천원 × 10부 × 연 2회 = 400천원(책자 인쇄) 100천원 × 연 2회 = 200천원(현수막, 배너 등)

※ 지급대상 : 위원회 7명 외부위원 위촉 전제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 [최초 1시간 : 100천원, 초과 1시간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2. 기획경제위원회

### 1.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① 개정 개요

- 국가의 핵심과제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 도내 사립유치원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되,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지원경비의 범위(안 제3조)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연령을 삭제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도록 후단 신설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지원경비의 범위)는 '만5세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비의 일부'를 '일부'로 개정하는 것으로 만 3~5세 까지 확대 지원 예상됨에 따라 비용 발생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만3~5세)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3조에 따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 비용은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함에 따라 '21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sup>2)</sup> 지원단가(제1안)와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sup>3)</sup> 지원단가(제2안)를 활용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원아수<sup>4)</sup>를 바탕으로 원아수 추세선 분석
-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지원 재원분담률은 도 40%, 교육청 60%로 합의('18.9.13.)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안) 31,724,000천원(연평균 6,344,800천원)
- (2안) 51,303,000천원(연평균 10,260,6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 (안 제3조)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소계(b)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총 비용(b-a)		1안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2안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2)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 간 차액발생 금액

(2021.3. 기준, 단위: 원)

구분	수납한도액(a)	정부지원보육료(b)	차액보육료(a-b)	비고
만3세	357,450	260,000	97,450	
만4세	345,260	260,000	85,260	
만5세	354,720	260,000	94,720	

3) 2017년 표준유아교육비(437,000원)를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재산정(448,880원)

(2021.3. 기준, 단위: 원)

구분	표준유아교육비(a)	유아학비(b)	학급운영비(c)	교재교구비(d)	차액(e=a-b-c-d)
만3~5세	448,880	260,000	19,150	12,130	157,600

4) 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원아수(교육법무담당관 제출자료)

(매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18,179	18,181	16,874	16,334	15,627	
만3세	4,945	5,031	4,945	4,511	3,847	
만4세	6,750	6,387	5,983	6,002	5,646	
만5세	6,484	6,763	5,946	5,821	6,134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만3~5세)

나. 세부추계내역

□ (1인) '21년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단가

○ 총비용 ≙ 31,724,000천원(연평균 6,344,8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용)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안 제3조)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소계(b)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 총 비용(b-a)			6,996	6,669	6,345	6,019	5,695	31,724

- 연간비용 ≙ 6,344백만원

= 소요비용 / 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A)					단가(원) (B)	개월 (C)	도비 분담율 (D)	소요비용(E=A×B×C×D)					
	'22	'23	'24	'25	'26				계	'22	'23	'24	'25	'26
합계	14,954	14,258	13,564	12,868	12,174				31,724	6,996	6,669	6,345	6,019	5,695
만3세	3,841	3,569	3,298	3,026	2,755	97,450	12	40%	7,713	1,797	1,669	1,543	1,415	1,289
만4세	5,376	5,116	4,857	4,598	4,339	85,260			11,361	2,515	2,393	2,272	2,151	2,030
만5세	5,737	5,573	5,409	5,244	5,080	94,720			12,650	2,684	2,607	2,530	2,453	2,376

□ (2안) 사립유치원 표준유아교육비 차액 지원단가

○ 총비용 ≍ 51,303,000천원(연평균 10,260,6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용)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유아교육비(안 제3조)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소계(b)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총 비용(b-a)		11,313	10,786	10,261	9,734	9,209	51,303

- 연간비용 ≍ 10,260백만원

= 소요비용 / 5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A)					단가(원) (B)	개월 (C)	도비 분담율 (D)	소요비용(E=A×B×C×D)					
	'22	'23	'24	'25	'26				계	'22	'23	'24	'25	'26
합계	14,954	14,258	13,564	12,868	12,174				51,303	11,313	10,786	10,261	9,734	9,209
만3세	3,841	3,569	3,298	3,026	2,755	157,600	12	40%	12,474	2,906	2,700	2,495	2,289	2,084
만4세	5,376	5,116	4,857	4,598	4,339	157,600			18,371	4,067	3,870	3,674	3,478	3,282
만5세	5,737	5,573	5,409	5,244	5,080	157,600			20,458	4,340	4,216	4,092	3,967	3,843

## 2.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 내 상점가 및 골목형 상권가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적인 상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와 소상공인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과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골목상권 공동체 신청과 기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충청남도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운영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제18조)

### ②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충청남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지원사업), 제13조(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에 소상공기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책무),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제9조(적용의 예외), 제11조(사업평가), 제12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제14조(기능), 제15조(구성 등), 제16조(운영),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8조(의견 청취 등), 제19조(위탁), 제2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0조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충남도 기추진사업<sup>5)</sup> 외에 부산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지원 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3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행정부지사) 포함 공무원 3명, 외부위원 12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2,020,400천원(연평균 404,0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안 제10조)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13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 총 비용(b-a)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골목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 구성·운영

5) 2021년 골목상권 소비 지원 사업 30,000천원(도비)

나.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2,020,400천원(연평균 404,0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골목상권 공동체육성및활성화지원)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안 제10조)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위원회 운영 (안 제13조)		4,080	4,080	4,080	4,080	4,080	20,400
	소계(b)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 총 비용(b-a)			404,080	404,080	404,080	404,080	404,080	2,020,400

○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 2,0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골목상권활성화지원)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00,000	
직접 사업비	골목 활력증진	258,000 -환경개선 70,000천원 × 3개 지역 = 210,000천원 -공동마케팅 15,000천원 × 3개 지역 = 45,000천원 -골목컨설팅 1,000천원 × 3개 지역 = 3,000천원
	골목방역 지원	70,000 -활력증진 골목 3개 × 4,000천원 = 12,000천원 -방역선정 골목 12개 × 4,000천원 = 48,000천원 -방역홍보물 15개 골목 = 10,000천원
	사 후 관 리	15,000 -5,000천원 × 3개 지역 = 15,000천원
	홍 보	10,000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5,000천원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발송 5,000천원
간접 사업비	사 업 운 영 비	7,000 -심사 및 자문수당 4,000천원 -사무용품, 인쇄비 및 출장비 3,000천원
	인 건 비	34,000 -전담인력 34,000천원
	수 수 료	6,000 -사업수행 수수료 6,000천원

※ 출처 : 부산시 2021년 우리동네 골목상권 활력증진 사업계획 참고

○ 위원회 운영비 ≍ 20,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위원회 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0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4,080	
참석수당	3,600	15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3,600천원
여비	480	20천원 × 외부위원 12명 × 연 2회 = 48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2명 위촉(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3.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에서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성평등지수’에 따르면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을 위한 복지 등 다수 분야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성인지 예산서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에 따른 성별 수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하여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증진에 부합하는 예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성인지 예산제와 성인지 예·결산 및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의미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양성평등 목표와 지표 설정, 예산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및 대상 사업 선정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성인지 예산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련 원칙과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도민의 참여와 관련 교육 및 중점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성인지 예산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지식, 모니터링, 성인지 감수성 등을 포함한 지침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성인지 예산제 운영협의체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5조)
- 성인지 예산제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 과정과 컨설턴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6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도민 참여 및 교육 등), 제9조(지침서 등), 제10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제16조(컨설팅 및 컨설턴트 양성 지원 등), 제18조(업무의 위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는 예산담당관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조는 공동체정책과에서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제16조, 제18조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위탁하여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2,076,084	2,198,820	
공동체정책과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97,100	145,750	안 제7조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978,984	2,053,070	안 제16조, 제18조

※자료 :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평가), 제5조(운영 원칙), 제8조(중점 관리 사업), 제11조(구성), 제12조(임기 등),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 제15조(실무협의체) 제17조(포상), 제19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0,500천원(연평균 8,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0,500천원으로 연평균 8,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9조에 따른 지침서는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자료를 활용하고, 1차년도에만 비용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10조에 따른 협의체는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0,500천원(연평균 8,1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성인지예산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안 제9조)	15,000	-	-	-	-	15,000	
	협의체 운영비 (안 제10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20,100	5,100	5,100	5,100	5,100	40,500	
□ 총 비용(b-a)		20,100	5,100	5,100	5,100	5,100	40,500	

○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 15,000천원

-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개발 15,000원 × 1식

※ 서울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 비용추계 자료 준용

○ 협의체 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협의체 운영비)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체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4.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충청남도가 운영중인 '충청남도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정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및 기능, 운영위탁, 사업비 보조 등의 근거를 규정함(안 제7조 ~ 제 10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실태파악), 제6조(지원사업), 제7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운영의 위탁), 제10조(사업비의 보조),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는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지원사업), 제7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운영의 위탁), 제11조(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제10조(사업비의 보조)는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비용추계 곤란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325,000	312,556	
충남광역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190,000	190,000	안 제6조, 7조, 9조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	8,000	8,000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118,000	106,906	안 제6조
노동정책 협의회 운영	9,000	7,650	안 제11조

※자료 :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8조(쉼터의 기능),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45,000천원(연평균 29,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45,000천원으로 연평균 29,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은 경기도 유사사례를 활용하고, 연구용역을 5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145,000천원(연평균 29,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실태조사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비 (안 제5조)		145,000	-	-	-	-	145,000
	소계(b)		145,000	-	-	-	-	145,000
□ 총 비용(b-a)			145,000	-	-	-	-	145,000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 145,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실태조사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9,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145,000천원 × 1식 / 5년

※ 연구용역비는 '2021년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고용·노동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용역' 비용(나라장터 배정예산) 준용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 의원회별 비용추계서

### 3. 행정문화위원회

#### 1.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본 조례안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을 융합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마이스(MICE)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우리도의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마이스(MICE)산업에 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마이스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종합계획 수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마이스산업 육성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7조)
- 협의회 설치 및 구성·운영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10조)
-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11조)
-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안 제12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6조(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조(실태조사), 제10조(협회의 운영),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비용 발생

- 미래산업국 미래성장과: 충남국제 전시 컨벤션센터 공사비 160,300백만원 신축 예정

○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협회의 설치), 제9조(협회의 구성),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4조(포상), 제15조(시행 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2.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도지사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평가·포상) 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0조 제3항은 재정지원 대상·규모 등이 미확정 되어있고, 지원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6조 제1·2항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공동체정책과에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2,130,000	
공동체정책과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143,000	안 제6조
	주민생활 밀착사업 및 풀뿌리 소규모 사업 (쓰레기수거 및 무단적치단속 등)	800,000	
	자원봉사 거점캠프 설치·운영	1,043,000	
	주민자치회 공모사업 지원	144,000	

※ 출처 : 공동체정책과 제출자료(2021. 9. 13.)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등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지원신청), 제8조(지원결정), 제9조(보고 등), 제11조(재정지원),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제13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용역비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 마을 경제 활성화사업 발굴 및 마을의 문제 해결 의제 발굴과 실행비
- 사업의 분석·평가 용역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에 서울특별시(마을관리소 운영주체 모집공모) 사례를 적용하여 시범개소를 매년 5개씩 2년간 운영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구체화 가정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548,954천원(연평균 109,791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용역 및 실태조사비(안 제5조)		74,477	-	34,477	-	-	108,954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등(안 제6조)			150,000	150,000			300,000
	마을경제활성화 발굴 등 (안 제6조제2항제5·6호)		-	50,000	50,000	-	-	100,000
	사업의 분석·평가용역비 (안 제10조)		-	20,000	20,000	-	-	40,000
	소계(b)		74,477	220,000	254,447	-	-	548,954
□ 총 비용(b-a)			74,477	220,000	254,477	-	-	548,954

####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가. 비용요소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용역비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 마을 경제 활성화사업 발굴 및 마을의 문제 해결 의제 발굴과 실행
- 사업의 분석·평가 용역비

##### 나.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548,954천원(연평균 109,791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지원사업)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용역비 ≙ 108,95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지원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비)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지원계획의 수립	40,000	40,000천원 × 1회

- 실태조사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금액	산출내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34,477×2년 = 68,954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 3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마을관리소 위탁사업비	300,000	30,000천원 × 5개소 × 2년

○ 마을 경제 활성화사업비 등 ≍ 1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마을경제활성화사업비 등)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마을경제활성화 사업비 등	100,000	10,000천원 × 5개소 × 2년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 의원회별 비용추계서

○ 사업의 분석·평가 용역비 ≒ 4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사업의 분석·평가 용역비) $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사업의 분석·평가 용역비(강사로 및 행사장대여료 등)	40,000	20,000천원×2회(상·하반기)

### 3.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최근 사회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와 공공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평가해 공공조달에 반영하고, 사회적가치를 고려하도록 독려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조달의 사회적가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함

- 목적, 정의 및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적용대상 및 범위(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안 제6조 및 제7조)
- 사회적책임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안 제9조 및 제10조)
- 계약정보의 공개(안 제11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제6조(공공조달 기본계획수립 등), 제7조(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의 이행), 제9조(사회적성과 평가기준 및 종합지표 개발)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6조(기본계획수립)는 자체 계획 수립으로 비용 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제10조(사회적책임 평가), 제11조(계약정보의 공개), 제12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47,042천원(연평균 69,40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47,042천원으로 연평균 69,40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7조 가이드라인 마련은 제9조 종합지표 개발에 포함하여 외부 전문기관 위탁 추진으로 전제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함
  - 성과평가는 「충청남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의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준용
- 안 제9조 종합지표 개발 및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구축 비용 산정
  - 종합지표 개발은 안 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인건비(5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은 도내 유관기관 시스템 구축비를 준용하여 최초 1회 구축하고 연간 운영비 계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47,04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성과평가 및 종합지표 개발 등) $_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조례안 제7조	성 과 평 가	-	33,333	33,333	33,333	33,333	133,332
		종합지표 개발	41,855	-	-	41,855	-	83,710
	조례안 제9조	측정시스템 구축	100,000	-	-	-	-	100,000
		시 스템 운 영	-	-	10,000	10,000	10,000	30,000
	소계(b)	141,855	33,333	43,333	85,188	43,333	347,042	
□ 총 비용(b-a)		141,855	33,333	43,333	85,188	43,333	347,042	

○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33,332천원

- 산출방식  $\sum_{i=1}^5 (\text{성과평가연구용역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 1년 용역비(과업기간 / 총 계약금액) × 4년  
 = 3년(36개월) / 100,000천원 × 4년  
 = 33,333천원 × 4년 = 133,332천원

※ 서울특별시 ‘제2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청년실업 해소 프로젝트’ 사례 준용, 1차 년도 2022년은 성과평가 미실시

○ 종합지표 개발 비용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41,855	
비용	인 건 비	38,050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5개월×1명=6,490약천원 ② 연 구 원 : 1,493천원(참여율 30%)×5개월×2명=14,930약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5개월×2명=16,630약천원
	제 비 용	3,80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 사회공헌도 측정시스템 구축 비용

- 구축비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비 준용
- 운영비 : 3차년부터 개발비의 10% 계상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구축 후 1년 무상 유지보수)

#### 4.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1호)

## ① 개정 개요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여 도내 무화(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도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 교육을 보조하기 위한 전승교육사 인정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21조)
  -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등 지원 사항 규정(안 제30조)
  -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 규정(안 제33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조(수당 및 여비), 제28조(정기조사 등)에 의해 비용 발생
- 안 제20조(명예보유자의 인정) 제5항, 제24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 제8항, 제25조(도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3항, 제30조(전승 지원 등), 제33조(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인 문화유산과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3,612,960	
문화유산과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전수교육 포함)	960,000	안 제20조 제5항 제24조 제8항 제25조 제3항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183,260	제30조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	579,700	제33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1,820,000	
	논산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70,000	

※ 출처 : 문화유산과 제출자료(2021. 8. 6)

- 안 제25조 제4항, 제26조 제1항의 지원 및 제34조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경우, 장학금 및 감면대상, 금액 등이 미확정 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구성 등),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8조(회의), 제9조(본과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 제11조(전문위원),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4조(간사 등), 제15조(회의록), 제17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8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제19조(보유자 등의 인정), 제21조(전승교육사의 인정), 제22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고시 및 효력발생 시기 등), 제23조(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27조(신고사항), 제29조(관계 전문가 등의 조사), 제31조(교육 지원 등), 제32조(행사 지원 등), 제35조(청문), 제36조(행정명령), 제37조(포상), 제3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54,150천원(연평균 50,83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54,150천원으로 연평균 50,83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정기조사는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비의 상세내역은 문화유산과 제출자료(붙임1) 참조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위원회 수당·여비 및 정기조사비용 ≍ 254,15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위원회 수당·여비 및 정기조사비용) $_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위원회 수당·여비 (안 제16조)	7,480	7,480	7,480	7,480	7,480	37,400
	정기조사 (안 제28조)	216,750					216,750
	소계(b)	224,230	7,480	7,480	7,480	7,480	254,150
□ 총 비용(b-a)		224,230	7,480	7,480	7,480	7,480	254,15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224,230	
위원회 수당·여비	소 계	7,480	
	참 석 수 당	6,600	150천원×22명×2회 = 6,600천원
	여 비	880	20천원×22명×2회 = 880천원
정기조사	소 계	216,750	
	인 건 비 등	50,462	인건비 등 50,462,395×1식 = 50,462,395원
	경 비 등	137,205	경비 등 137,205,000×1식 = 137,205,000원
	일 반 관 리 비	9,383	일반관리비 등 9,383,369×1식 = 9,393,369원
	부 가 세	19,705	인건비 등, 경비 등, 일반관리비의 10%

※ 지급대상 : 위원회 25명 중 외부위원 22명 위촉(공무원 3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정기 2회(상·하반기 총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붙임1** 문화유산과 제출자료

## 용역 원가 계산서

**■ 사업명 : 2021 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연구용역**

단위 :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인 건 비		50,462,395	23.28	
책 임 연 구 원		15,580,219	7.19	
연 구 원		20,906,735	9.65	
연 구 보 조 원		13,975,441	6.45	
경 비		137,205,000	63.30	
여 비		6,600,000	3.04	
원 고 료		18,000,000	8.30	
사 진 촬 영 비		10,000,000	4.61	
인 쇄 비		40,434,000	18.65	
전 산 처 리 비		50,000,000	23.07	
연 구 용 재 료 비		3,171,000	1.46	
회 의 비		7,000,000	3.23	
발 송 비		2,000,000	0.92	
일 반 관 리 비 ( 5 ) %		9,383,369	4.33	인건비+경비의 5% 산정
이 윤 ( 0 ) %			0.00	
소 계		197,050,764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부 가 가 치 세 ( 1 0 ) %		19,705,076	9.09	소계*10%
합 계		216,750,000	100.00	천원단위 절사

**붙임2 문화유산과 제출자료**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기사업명	합계	사 업 비			
		소계	국비	도비	시군
합계(12건)	5,844,930	3,217,630	1,078,400	2,139,230	2,627,30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자,조교)-81명	960,000	480,000		480,000	480,0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지원 (54개종목)	183,260	91,630		91,630	91,630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보유단체)-20개소	204,000	102,000		102,000	102,000
지역문화유산 활용 자원화(9개)	656,220	198,220		198,220	458,000
지역문화유산 전승지원(17건)	784,000	392,000		392,000	392,000
지역무형유산 보조지원	200,000	130,000	100,000	30,000	70,00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지원(2건)	579,700	289,850		289,850	289,850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216,750	216,750		216,75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3건)	105,000	60,900	42,000	18,900	44,100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2건)	66,000	38,280	26,400	11,880	27,72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지원(4건)	1,820,000	1,183,000	910,000	273,000	637,000
논산칠장 전수교육관 개보수	70,000	35,000		35,000	35,000

## 4. 복지환경위원회

### 1.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① 개정 개요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의 안전과 근무환경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호 체계 구축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 및 고용안정 강화
  - 사회복지사의 인권보장 강화(안 제8조)
  -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근거(안 제8조의2)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개선(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제9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사회복지과 등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계		149,935,021
사 회 복 지 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등 9개 사업	6,138,097
출 산 보 육 정 책 과	보조교사 지원(민간) 등 12개 사업	67,134,359
노 인 복 지 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처우개선비 등 9개 사업	48,625,771
장 애 인 복 지 과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시·군) 등 2개 사업	3,646,290
건 강 증 진 식 품 과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3개 사업	23,185,093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추가지원(시·군) 등 15개 사업	1,165,411
사 회 복 지 과	충청남도 사회서비스원 연구 사업비(실태조사 포함)	40,000

※ 자료 : 사회복지과-7227(2021. 5. 17) 붙임3 참조

- 조례안 제8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8조(신분 및 인권보장) 제5항은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위원회 설치·운영), 제11조(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4조(회의)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8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
  - 道 출연기관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비용 준용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전임 직원 4명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제비용으로 구성

####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2,197,580천원(연평균 439,51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8조의2	사업비	13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650,000
		인건비	207,516	207,516	207,516	207,516	207,516	1,037,580
		경상경비	78,000	78,000	78,000	78,000	78,000	390,000
		일반관리비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120,000
			소계(b)	439,516	439,516	439,516	439,516	439,516
		□총비용(b-a)	439,516	439,516	439,516	439,516	439,516	2,197,580

####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가. 비용요소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의2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 나.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2,197,580천원(연평균 439,516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439,516천원

= 사업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일반관리비

= (130,000천원 + 207,516천원 + 78,000천원 + 24,000천원) × 5년 = 2,197,580천원

○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설치·운영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액	산 출 내 역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	합 계	439,516		
	사 업 비	130,000	26,000,000원 × 5개사업 = 130,000천원	
	인건비	소 계	207,516	
		센 터 장	77,904	6,492,000원 × 1명 × 12월 = 77,904천원
		팀 장	59,736	4,978,000원 × 1명 × 12월 = 59,736천원
		팀 원 1	39,924	3,327,000원 × 1명 × 12월 = 39,924천원
		팀 원 2	29,952	2,496,000원 × 1명 × 12월 = 29,952천원
	경 상 경 비	78,000	6,500,000원 × 12월 = 78,000천원	
	일 반 관 리 비	24,000	2,000,000원 × 12월 = 24,000천원	

**2.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비용추계서)**

① 제정 개요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 지원 제도를 명문화 하고자 함

-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도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3조(수당 등), 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추진상황 점검)는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 제18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제19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제20조(협력 관계), 제21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22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제23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제24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제25조(녹색 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기추진 증이므로 비용추계 제외(기추진 사업현황 붙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7조(경력 인정 등), 제8조(유관기관 활용 및 정보제공),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12조(생산품 우선구매), 제13조(표창),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비(인건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탄소중립위원회는 상·하반기(정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선출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5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 안 제26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은 서해안 기후환경 연구소 위탁을 전제로 지원센터 인건비만 추계함

- 지원센터인력을 일반임기제 7급상당 3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
-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첫해에는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하반기(6개월)운동을 전제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은 조례안 상한선 기준 100명, 8개분과위원회 각9명을 분기별(연4회)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추계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1,650,100천원(연평균 330,0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46,960	146,960	146,960	146,960	146,960	734,800
	지원센터운영(인건비) (안 제26조)		101,700	203,400	203,400	203,400	203,400	915,300
	소계(b)		248,660	350,360	350,360	350,360	350,360	1,650,100
□ 총 비용(b-a)			248,660	350,360	350,360	350,360	350,360	1,650,100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운영비(인건비)

**나.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1,650,100천원(연평균 330,02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탄소중립위원회 및 센터 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 146,96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탄소중립위원회 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46,960	-
위 원 회 참 석 수 당	76,000	200천원× 95명 × 4회
위 원 회 여 비	7,600	20천원 × 95명 × 4회
분 과 위 원 회 참 석 수 당	57,600	200천원× 72명 × 4회
분 과 위 원 회 여 비	5,760	20천원 × 72명 × 4회

-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95명(총 100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5명 제외)
- ※ 지급대상 : 8개 분과위원회 각 9명(총 72명)
- ※ 참석횟수 : 분기별(4회) 전제
-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 [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 지원센터 운영(인건비)위탁 ≍ 915,3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지원센터 직원보수)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지원센터 직원보수	915,300	(67,800천원×3명×6/12개월)+(67,800천원×3명×4년)

상세 비용추계 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상세내용
합계		67,799,600	
보수	기 본 연 봉	44,514,000	44,514,000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개방형 직위가 아닌 임기제 공무원' '7급 하한액' 참고 ※ 2차년도 이후 성과연봉 지급되나, 해당 비용추계 시 미반영
	특 수 직 무 수 당	2,136,600	178,050원 × 12월 = 연봉월액 3,709,500원 / 35시간 × 40시간 × 84% × 5% × 12개월
	정 액 급 식 비	1,680,000	140,000원 × 12월
	직 급 보 조 비	1,627,440	135,620원 × 12월 = 155,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대 민 활 동 비	525,000	43,750원 × 12월 = 50,000원 × 35시간 / 40시간 × 12월
	시간외근무수당	6,571,200	547,600원 × 12월 = 10,952원 × 50시간 × 12월
	연 가 보 상 비	893,240	893,240원 (연가보상비 10일(70시간) 지급 가정) = 연봉월액 3,709,500원 × 84% × 86% × 1/30 × 1/7 × 70시간
맞춤형복지제도		1,160,000	기본포인트 1,160,000원
고용보험료 등(기관부담)		8,692,120	8,692,120원 = 보수 57,947,480원 * 약15%

**붙임** 기후환경정책과 기추진 사업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22,413,193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 대응업무추진	17,000	안제3조
	2050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립	180,000	제6조
	제3차 기후변화 적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000	제18조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사업	200,000	제19조
	폭염대비 미세먼지 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150,000	제19조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728,000	제19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8,305	제19조
	언더투연합연회비	26,000	제20조
	충청남도 녹색성장 포럼 운영	45,000	제21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2,934,000	제22조
운영지원과	공공차량 전기·수소 우선 대체	187,000	제22조
산림자원과	지자체 도시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	8,471,800	제23조
	명상숲 조성	1,080,000	제23조
	도시바람길숲 조성	7,200,000	제23조
	자녀안심그린숲 조성	400,000	제23조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지원	70,000	제24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270,000	제24조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180,000	제24조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공간 조성	36,338	제24조
	기후변화 대응 홍보	29,750	제25조

※ 출처 : 기후환경정책과 제출자료 (2021. 10. 18)

의원회별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 3.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최근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병력자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심리상담·홍보·지원 사업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우수한 실적을 보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3조(책무), 제5조(교육 및 홍보), 제6조(지원 사업)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6조 제1항 제4호(실태조사)를 제외한 각호의 사업은 감염병관리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계		3,160,905	
감염병관리과	감염병환자등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자체)	비예산	안 제3조
	감염병 관리 · 대응 · 예방 홍보	30,000	제5조
	신종 · 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8,600	
	에이즈 예방 · 교육 및 홍보	22,950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118,915	제6조
	한센병환자 재활사업 지원	37,000	
	한센병환자 정착촌 지원	20,400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 지원	104,040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600,000	
건강증진식품과	코로나 우울 예방 긴급심리 지원	100,000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2,119,000	

※ 출처 : 감염병관리과 및 건강증진식품과 제출자료(2021. 9. 29)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도민의 책무), 제7조(협력체계), 제8조(포상),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72,385천원(연평균 34,477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72,385천원으로 연평균 34,477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조례안 제6조 제1항 제4호(실태조사)는 매년 실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실태조사비용 ≍ 172,38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실태조사)<sub>i</sub>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비용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소계(b)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총 비용(b-a)			34,477	34,477	34,477	34,477	34,477	172,385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붙임** 20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 3. 2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일부개정]

• **별표목록**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년)

• **별표연혁**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 5] [제534호, 계약예규, 2020. 12. 28.]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년)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1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20년 0.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

의원회별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1호 작성 사례

## 4.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자녀를 출산·양육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로 이뤄진 가정에 대하여 학업, 양육, 보건, 주거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선정 사항 규정(안 제5조 및 제6조)
  -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규정(안 제7조~제9조)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제12조)
  - 협력체계 구축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안 제13조 및 제1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계획 수립), 제8조(실태조사), 제9조(지원사업), 제10조(위원회)에 의해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7조, 제9조의 경우, 소관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계		3,770,217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 수립(자체)	비예산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360,000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지원	51,760
	미혼모부 등 심리정서 상담지원	16,320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3,110,000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79,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4개소) 중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2개소)	152,937
참고	'22년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지원대상에 청소년부모 가정 추가, 청소년부모 자녀 돌봄지원, 심리상담 및 법률 지원 등 (여성가족부 가내시로 계획)	885,720

※ 출처 : 여성가족정책관 제출자료(2021. 10. 6.)

- 안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는 사업부서의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이 부재하고 지원대상의 규모, 범위 등을 규정하는데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하여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2조(회의),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환수조치), 제16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95,354천원(연평균 19,071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95,354천원으로 연평균 19,071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 가정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95,35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청소년부모가정 실태조사 및 위원회 수당·여비)<sub>i</sub>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세입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 제8조	실태조사비용	34,477	-	-	34,477	-	68,954
	조례안 제10조	위원회 수당·여비	5,280	5,280	5,280	5,280	5,280	26,400
	소계(b)		39,757	5,280	5,280	39,757	5,280	95,354
□ 총 비용(b-a)			39,757	5,280	5,280	39,757	5,280	95,354

○ 실태조사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금액	산출내역
실태조사비용	계	34,477	
	책임연구원 인건비	9,735	단가×명×개월: 3,245천원×1명×3개월=9,735천원
	연구원 인건비	7,464	단가×명×개월: 2,488천원×1명×3개월=7,464천원
	연구보조원 인건비	9,978	단가×명×개월: 1,663천원×2명×3개월=9,978천원
	자료수집비	3,600	단가×명×30일: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700	제본비 및 소모품비 외

○ 위원회 수당·여비 = 26,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위원회 수당·여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위원회 수당·여비 = 참석수당 + 여비  
 = 4,800천원 + 480천원  
 = 5,28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5,280	-
참석수당	4,800	200천원 × 12명 × 2회 = 4,800천원
여 비	480	20천원 × 12명 × 2회 = 48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2명(총 15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3명 제외)

※ 참석횟수 : 상·하반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20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10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5. 농수산해양위원회

### 1.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이유

-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중요한 근거인 해양보호생물이며 희유성 해양포유동물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에 대한 체계적 보전을 위함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5조~제9조)
  -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를 규정함(안 제10조)
  -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를 규정함(안 제11조)
  - 점박이물범 등 해양 동물의 혼획방지를 규정함(안 제14조)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을 규정함(안 제16조)
  - 해양생태계의 복원과 해양생태관광 육성을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국내·국제협력을 규정함(안 제22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제11조(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 제13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2조(점박이물범 서식지외 보전기관의 지정), 제14조(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혼획 방지), 제15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호계획), 제16조(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환경개선 및 주민 지원), 제17조(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등), 제18조(해양생태계의 복원), 제19조(해양 생태관광 육성),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 제21조(국내·국제협력)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안 제15조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21조는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구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는 비용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비용
-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비용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 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에 따른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보전비용은 ‘가로림만 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17.11.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을 활용

#### 다. 추계 결과

○ 총 비용 ≍ 3,700,000천원(연평균 740,000천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관리위원회 설치·운영비 (안 제5조)	8	8	8	8	8	40
	점박이물범 조사 비용 (안 제10조)	-	100	20	20	20	160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비용 <sup>6)</sup> (안 제11조, 제13조)	-	100	3,000	200	200	3,500
	소계(b)	8	208	3,028	228	228	3,700
□ 총 비용(b-a)		8	208	3,028	228	228	3,700

6) 점박이물범 등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 전시 및 교육·홍보, 구조·치료 기능

####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가. 비용요소

-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조사·관찰·연구 비용
- 점박이물범 전시 및 교육·홍보관의 설치·운영비
- 점박이물범 등 해양동물의 구조·치료 비용

##### 나.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 ≍ 3,700,000천원(연평균 74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점박이물범및서식지보전비용)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관리위원회 설치·운영비 (안 제5조)		8	8	8	8	8	40
	점박이물범 조사 비용 (안 제10조)		-	100	20	20	20	160
	해양보호구역센터 설치 등 비용 (안 제11조, 제13조)		-	100	3,000	200	200	3,500
	소계(b)		8	208	3,028	228	228	3,700
□ 총 비용(b-a)			8	208	3,028	228	228	3,700

## 2.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나무가 자라온 역사성과 가치를 위해 택지개발, 도로개설, 재건축등으로 버려지는 나무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여 가로수, 공원, 녹지대 조성 등에 재이식하여 녹지 보전과 자연경관을 향상시키고 생태·역사·문화·학술·조경 보전 가치가 있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나무은행”, “사업시행자”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수목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강구 규정(안 제4조)
  -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또는 추진시 전담부서와 협의 사항 규정(안 제5조)
  - 기능받거나 옮겨심기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와 수목의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조(운영의 위탁), 제12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사전협의), 제6조(수목의 기증), 제7조(수목 조사 및 접수), 제8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제9조(수목관리), 제10조(활용),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나무은행 위탁운영비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3.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간영역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해양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해양교육 활성화를 통해 해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개선, 인재양성 및 해양역량강화에 기여하고 해양문화 가치 증대 및 관련 사업 지원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해양문화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확보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의 목표와 추진방향등을 포함한 중장기 지역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연구, 관련시설 조성 등과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 지원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등을 위한 해양문화 교육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11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역계획 수립 등), 제6조(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사업), 제7조(해양문화 및 해양교육의 지원), 제8조(충청남도 해양문화교육센터), 제9조(충청남도 해양문화교육협의회)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는 해양정책과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 및 제7조는 해양정책과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900,000	3,050,000	
해양정책과	남당항 축제광장 조성	900,000	1,000,000	안 제6조, 제7조
	남당항 해양공원 조성	700,000	700,000	
	삽교호 관광지 어린이 해양테마과학관 조성	300,000	900,000	
	보령 달빛등대로 조성	-	300,000	
	삼길포항 해양문화 경관조명 설치	-	150,000	

※ 자료 : 해양정책과 제출, 2020~2021년 예산서(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10조(협의회의 구성),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제12조(수당), 제13조(포상),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25,500천원(연평균 45,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25,500천원으로 연평균 45,1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8조에 따른 충남해양문화교육센터는 기존 해양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충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예산 활용(참고자료)

- 안 제9조에 따른 협의회는 공무원 5명, 외부위원 15명인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연 2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25,500천원(연평균 45,1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해양문화및해양교육활성화지원)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해양문화교육센터운영 (안 제8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협의회 운영비 (안 제9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45,100	45,100	45,100	45,100	45,100	225,500
□ 총 비용(b-a)		45,100	45,100	45,100	45,100	45,100	225,500

○ 해양문화교육센터 운영 ≃ 2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해양문화교육센터운영) $_i$

- 연간비용 ≃ 40,000천원

= 40,000천원 × 1개소

※ 충남도 지역해양환경교육센터(충남센터) 운영 예산 준용

○ 협의회 운영비 ≃ 25,5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협의회 운영비)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5,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외부위원 15명 × 연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협의회 20명 중 외부위원 15명 위촉(공무원 5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4.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 처리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가축 살처분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조)

-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함(안 제5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 6조)

-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업무부서 등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 제5조(실태조사),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 제1항의 경우, 충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서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적 외상 발생을 예방하는 교육, 홍보, 상담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비용 미발생
- 또한, 안 제7조의 심리지원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심리지원단의 운영 규모, 인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130,000천원(연평균 26,0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30,000천원으로 연평균 26,0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4조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치료비용
  - '2021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참고1)'에서 살처분 참여자 심층 치료비를 1인당 10만원, 치료기간은 연간 10일을 기준 비용추계
  - 심리적 외상치료 대상인원은 경기도 2019년 심리지원 대상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할 경우, 치료대상자는 전체 심리지원대상자의 0.005459%로 나타남  
(동물방역위생과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살처분참여자 인원은 1,389명임)  
※ 0.005459% = 12명(치료비 지원인원) ÷ 2,198명(심리지원 대상자)

- 안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비용

- 나라장터 입찰자료인 '가축매물(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재공고'를 참고하여 4,500만원으로 추계함(참고 2)
-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심리적 외상치료비 및 실태조사비 ≍ 13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심리적외상치료비 및 실태조사비) $_i$  ※ i = 비용추계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심리적 외상 치료비 (제4조)		8,000	8,000	8,000	8,000	8,000	40,000
	실태조사비 (제5조)		45,000	-	-	45,000	-	90,000
	소계(b)		53,000	8,000	8,000	53,000	8,000	130,000
□ 총 비용(b-a)			53,000	8,000	8,000	53,000	8,000	130,000

○ 예산과목별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3,000	-
심리적 외상치료비	8,000	2021년 살처분참여자 전체인원×치료대상자 비율(1,389명 * ×0.005459% * ) ×치료비(10만원)×연간치료기간(10일) ≍ 8명×10만원×10일 ≍ 8,000,000원 ※ 0.005459% = 12명(치료비 지원인원) ÷ 2,198명(심리지원 대상자)
실태조사비용	45,000	45,000천원 × 1식 = 45,000천원

※ 출처 : 나라장터 가축매물 참여자 트라우마 현장실태조사 연구용역 사례

##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1.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적용대상 및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및 지원신청에 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심리회복, 행복하우스, 임시거처에 관한 지원내용(안 제8조 ~ 제10조)
  -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11조 ~ 제1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조(심리회복 지원),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0조(임시거처 지원),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8조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
  - 제10조는 마을회관 등을 임시거처로 이용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의 종류), 제6조(지원신청), 제7조(유관기관 등 협력 지원),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5조(재원), 제16조(시행규칙)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는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을 준용
  - \*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
- 행복하우스 지원 가구(47개)는 2020년 충남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에 사회적 취약 계층 비율을 곱하여 산정
  - 최근 3년간 화재 가구수·취약 계층 비율의 연평균증가율이 낮아 비용추계 기간(5년) 동안 지원 가구수는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조례안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는 공무원 4명, 위촉위원 9명인 총 13명으로 구성하고, 연 4회(분기별 1회) 운영으로 가정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4,732,400천원(연평균 946,48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제9조)		940,000	940,000	940,000	940,000	940,000	4,700,000
	심의위원회 운영(제12조)		6,480	6,480	6,480	6,480	6,480	32,400
	소계(b)		946,480	946,480	946,480	946,480	946,480	4,732,400
□ 총 비용(b-a)			946,480	946,480	946,480	946,480	946,480	4,732,400

##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가. 비용요소

-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조(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제11조(화재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수당)

## 나.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4,732,400천원(연평균 946,4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및 심의위원회 운영)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 4,700,0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행복하우스 건축 지원 = 20,000천원\* × 47가구\*\* × 5년 = 4,700,000천원

\* 지원금 : 부산광역시 지원금액

\*\* 가구수 : 2020년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 ×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 2020년 주거시설 화재 가구수 : 556가구

\*\*\*\* 사회적 취약계층 비율 : 8.5%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 총세대수 = (83,743세대 / 983,153세대)]

- 심의위원회 운영 ≒ 32,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심의위원회 운영)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심의위원회 운영 ≒ 32,4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여비) × 5년

= (5,400천원 + 1,080천원) × 5년 = 32,400천원

- 연간비용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6,480	
위원회 참석수당	5,400	15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5,400천원
위원회 여비	1,080	2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720천원
		10천원 × 위촉 9명 × 연 4회 = 3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위촉 위촉위원 9명(공무원 4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4회 전제(분기별 1회)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1시간) : 100천원, 1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관외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관내 : 1명당 10천원 [4시간 이하]

## 2.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① 개정 개요

- 대중교통의 실질이용자인 어린이·청소년에게까지 대중교통이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단계 충남형 교통복지정책의 근거 마련
-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와 책무를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의 근거 명문화
  - 어린이·청소년과 대중교통운영자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제3항)
  -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에 대한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무료화 규정(안 제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지원 대상 및 할인율)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4조 이외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도내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초, 중·고등학생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지원 대상 학생 수
  -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2017~2035) 참고(자료 별첨)
  - 대상 연령
    - 어린이: 만 6세 이상 ~ 만 11세 이하
    - 중학생: 만 12세 이상 ~ 만 14세 이하
    - 고등학생: 만 15세 이상 ~ 만 17세 이하
  - ※ 만 18세 제외 사유: 만 18세부터 대학생으로 통계가 작성됨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에서 제외
- 대중교통 이용횟수는 210일<sup>8)</sup> × 3회<sup>9)</sup>로 가정하여 최대 630회 적용
- 충남 대중교통 이용요금: 2021년 요금 적용

(단위: 원)

구분	어린이	청소년
시지역 (천안, 아산)	1,500	1,500
군지역 (홍성, 예산)	1,400	1,400

8) 법정 최저 수업 일수 190일 + 10% 가산으로 210일 가정

9) 조례안 제4조에 따라 1일 무료횟수 3회

○ 충남 대중교통 연간 이용횟수: 2019년 기준(이용 현황 자료 별첨)

(기준: 연, 회)

구분	어린이		청소년	
	카드이용기준	조정	카드이용기준	조정
합계	5,435	5,191	13,196	8,565
소계	2,644	1,324	7,071	4,609
천안	461	461	1,697	630
공주	518	518	830	630
보령	299	299	999	630
아산	349	349	931	630
서산	210	210	774	630
논산	311	311	738	630
계룡	90	90	199	199
당진	406	406	903	630
소계	2,791	2,547	6,125	3,956
금산	159	159	356	356
부여	664	630	935	630
서천	351	351	746	630
청양	198	198	450	450
홍성	233	233	977	630
예산	840	630	1,971	630
태안	346	346	690	630

※ 카드 이용횟수 산출 : 2019년 대중교통(버스) 이용건수 / 어린이 및 청소년 수

※ 조정 사유 : 청소년의 대중교통 환승<sup>10)</sup>이용으로 카드 이용회수가 누적 집계되어 전체 이용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환승율에 따른 조정 필요

※ 수업일수 210일, 1일 3회 이용을 가정하여 연 최대 630회로 조정

※ 2019년 4월 기준 도내 청소년의 대중교통 환승 비율 평균 48.2%(자료 별첨)

10) 도내 대중교통(시내·농어촌 버스)은 1회에 한하여 무료 환승 가능하며 시군별로 환승 시간은 30분 또는 1시간 이내 등 다양함

○ 충남 대중교통 학생 이용비율

- 어린이 : 2019년 충남 사회조사 시군별 연령별 주 이용교통수단 비율<sup>11)</sup> 적용

구분	도 보	승용차	시내· 농어촌 버스	통근· 통학 버스	오토 바이	도시 철도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시지역	25.3	53.9	8.5	6.2	1.7	0.7	0.3	0.6	1.7	1.1
군지역	37.4	45.7	4.6	2.5	4.3	0	0.1	0.4	2.8	2.2

- 청소년 : 2015년 통계청 인구총조사<sup>12)</sup> 자료 주 이용교통수단 비율 적용

구분	도 보	승용차	시내· 농어촌 버스	통근· 통학 버스	고속· 시외 버스	도시 철도	철도	택시	자전거	기타
고교생	41.5	12.2	28.8	13.8	1.0	0.2	0.5	0.2	1.4	0.3
중학생	58.9	14.6	14.9	8.4	0	0	0	0	3.0	0.1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171,926,835천원(연평균 34,385,367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조례안 (4조)	어린이	시지역	5,022,316	4,870,960	4,686,843	4,494,505	4,327,166	23,401,790
			군지역	393,019	372,612	352,110	333,092	316,558	1,767,391
		소계	5,415,335	5,243,572	5,038,953	4,827,597	4,643,724	25,169,181	
	청소년	시지역	시지역	26,095,174	26,688,842	27,303,509	27,550,774	27,176,482	134,814,781
			군지역	2,394,144	2,412,197	2,408,754	2,394,644	2,333,134	11,942,873
		소계	28,489,318	29,101,039	29,712,263	29,945,418	29,509,616	146,757,654	
	합계(b)			33,904,653	34,344,611	34,751,216	34,773,015	34,153,340	171,926,835
	□ 총 비용(b-a)			33,904,653	34,344,611	34,751,216	34,773,015	34,153,340	171,926,835

11)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19 도민의 삶과 정책 연구보고서 51쪽 자료 참조

12) 통계청 인구총조사는 매5년마다 실시하며 2020년 실시 결과는 2021년 12월 공표 예정임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도내 만 6세 이상 ~ 만 17세 이하 초, 중·고등학생 대중교통(시내·농어촌버스, 1일 3회) 이용요금 지원

나.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171,926,835천원(연평균 34,385,367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대중교통 이용요금 지원(5년간) = 171,926,835천원
- = 어린이(시지역 + 군지역) + 청소년(시지역 + 군지역)
- = 23,401,790천원 + 1,767,391천원 + 134,814,781천원 + 11,942,873천원
- 시·군별,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요금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합계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어린이	171,926,835	25,169,181	23,401,790	5,022,316	4,870,959	4,686,842	4,494,505	4,327,166
			1,767,391	393,019	372,612	352,110	333,092	316,558
청소년	171,926,835	146,757,654	134,814,781	26,095,174	26,688,842	27,303,509	27,550,774	27,176,482
			11,942,873	2,394,144	2,412,197	2,408,754	2,394,644	2,333,134

**3. 충청남도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미첨부사유서 1호)**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 혁신도시로 지정된 내포신도시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을 위해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련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캠퍼스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

- 목적과 책무(안 제1조, 제2조)
-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계획, 시책개발과 목표 등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 3조)
-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관련 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 내포캠퍼스 유치에 필요한 사무협조, 행정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 내포캠퍼스 유치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1조)
- 내포캠퍼스 유치 시책 추진을 위해 교육청, 지자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

② 비용발생 요인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4조(홍보 등)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목적	예산액 (2021)
혁신도시정책과	내포 캠퍼스 유치 홍보 및 충남 혁신도시 홍보	옥외홍보 및 언론홍보, 홍보책자 제작 등	759,700

- 조례안 제9조(운영지원)에서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따른 비용발생.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책무),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내포캠퍼스 유치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제6조(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구성), 제8조(회의·운영), 제10조(간사 등),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2조(협조요청 등),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포상), 제16조(시행규칙)등은 선언적, 권고적이며 비용발생과 무관함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④ 미첨부 사유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54,400천원(연평균 10,8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4,400천원으로 연평균 10,8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는 분기별1회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위원장(선출직 공무원: 공동 위원장 2명), 간사(담당과장), 서기(담당팀장) 등 공무원 4명으로 가정(전체 20명)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4명)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제외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54,400천원(연평균 10,88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내포캠퍼스유치 위원회 운영)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수당 및 여비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소계(b)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 총 비용(b-a)			10,880	10,880	10,880	10,880	10,880	54,400

○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운영 ≍ 54,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내포캠퍼스유치 위원회 운영) $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 내포캠퍼스 유치 위원회 운영 = 연간 참석수당 + 연간 여비  
= 9,600천원 + 1,280천원 = 10,880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합 계	10,880	-
참 석 수 당	9,600	150천원 × 16명 × 4회 = 9,600천원
여 비	1,280	20천원 × 16명 × 4회 = 1,28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6명(총 20명 중 선출직 및 일반직 공무원 4명 제외)

※ 참석횟수 : 분기별 1회(총 4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 4.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1호)

##### ① 개정 개요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새로이 정비하고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려는 것임
  -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 ~ 제7조)
  -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4조)
  - 자율방재단연합회의 원활한 활동과 임무수행을 위하여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연합회의 경비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9조를 제외한 다른 개정 조문은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선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388,175천원으로 연평균 77,63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조례안 제9조에 따른 연합회의 경비 지원 비용
  - 2021년 道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준용(첨부 자료 참조)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합회의 경비 지원)*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총비용 ≙ 388,175천원(연평균 77,635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연합회의 경비지원 (조례안 제9조)	운영비	60,635	60,635	60,635	60,635	60,635	303,175
		사업비	17,000	17,000	17,000	17,000	17,000	85,000
	소계(b)		77,635	77,635	77,635	77,635	77,635	388,175
□ 총 비용(b-a)			77,635	77,635	77,635	77,635	77,635	388,175

## 7. 교육위원회

### 1.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용추계서)

#### ① 제정 개요

-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제6조(교원의 연수 등), 제7조(재정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교원의 연수 등)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에서 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7조(재정 지원)의 경우 제1호는 제5조와 동일, 제2호는 제6조와 동일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시행규칙)은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 나. 추계의 전제

###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연구·조사, 교재 개발 비용
  - 연구·조사, 교재 개발은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2021년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하여 추계함
  -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제비용(자료수집, 제본 등)으로 구성
  - 교재 개발은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창의적 체험활동 도서개발' 비용 준용(2021년 본예산 편성)

## 다. 추계 결과

○ 총비용 ≙ 545,230천원(연평균 109,04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조례안(5조)	연구·조사	20,186	20,186	20,186	20,186	20,186	100,930
		교재 개발	88,860	88,860	88,860	88,860	88,860	444,300
	소계(b)		109,046	109,046	109,046	109,046	109,046	545,230
□ 총 비용(b-a)			109,046	109,046	109,046	109,046	109,046	545,230

④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가. 비용요소

○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의 추진)

나. 세부추계내역

○ 총 비용 ≙ 545,230천원(연평균 109,046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구·조사 및 교재 개발 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109,046천원  
 = 연구·조사 비용 + 교재 개발  
 = (20,186천원 + 88,860천원) × 5년 = 545,230천원

○ 연구·조사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연구·조사 비 용	계	20,186	
	인 건 비	18,351	① 책임연구원 : 1,298천원(참여율 20%)×3개월×1명=약3,894천원 ② 연구원 : 1,493천원(참여율 30%)×3개월×1명=약4,479천원 ③ 연구보조원 : 1,663천원(참여율 50%)×3개월×2명=약9,978천원
	제 비 용	1,835	자료수집, 제본 등

※ 참여율 및 투입인력 수 가정 후 산출, 제비용은 산출 인건비의 10% 가정 후 산출

○ ‘창의적 체험활동’ 도서개발 비용 (2021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본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교재 개발 비 용	계	88,860	
	일 반 수 용 비	78,140	20,000원 × 3,907종 = 78,140천원
	개 발 수 당	7,500	50,000원 × 15명 × 10회 = 7,500천원
	여 비	2,700	60,000원 × 15명 × 3일 = 2,700천원
	협 의 회	520	20,000원 × 13명 × 2회 = 520천원

미  
첨  
부  
사  
유  
서  
1  
호  
작  
성  
사  
례  
·  
위  
원  
회  
별  
비  
용  
추  
계  
서

## 2.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① 개정 개요

- 본 조례안은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어 타시도와 인접한 학교나 전국 모집 고등학교의 경우 타시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은 충남교육청 관할 학교의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서 제외됨
- 이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자녀학생' 정의에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부분을 삭제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다자녀학생 교육에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다자녀학생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려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 또는 시설 범위를 규정함(안 제4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정의), 제4조(지원 대상)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2조, 제4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비용추계 결과

#### 가. 대상

- 타 시·도에 주소를 두고 충청남도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다니는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나.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지원비 상승 등은 반영하지 아니함



○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123,862천원 × 5년 = 619,310천원

(단위: 천원)

항목		2021년 본예산	확대 시 소요액	증감
신입생 입학준비금(초)		211,000	211,300	300
고교학비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300	570	270
	수업료	145,750	201,400	55,650
	학교운영지원비	49,500	68,400	18,900
교과서대(자율형 사립고)		5,500	7,600	2,100
급식비 중식(자율형 사립고)		13,578	19,280	5,70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1,757,793	1,780,913	23,120
수학여행비(초·중·고)		505,440	516,780	11,340
수련활동비(초·중·고)		188,250	194,730	6,480
합계		2,877,111	3,000,973	123,862

※ 자료 :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

### 붙임1 다자녀 학생수 현황

2021. 9. 1. 기준

학교급별	전체 학생수	다자녀 학생수	다자녀학생 중 충남 외 거주 학생수	전체 대비 다자녀학생수비율
초 등 학 교	118,555	11,277	27	9.5%
중 학 교	59,674	5,193	9	8.7%
고 등 학 교	56,771	4,374	134	7.7%
특 수 학 교	1,137	53	-	4.7%
합계	236,137	20,897	170	8.8%

※ 자료 :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

### 붙임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범위·내용

항목	지원 범위	지원 내용	
신입생 입학준비금(초)	충청남도예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	10만 원	
고교학비 (자율형 사립고)		입학금	고지 금액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자율형 사립고)		실비 지원	
급식비 중식(자율형 사립고)		학기 중 평일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초·중·고)		연 60 만 원	
수학여행비(초·중·고)		급별 단가 내 실비 (초 14만원, 중 18만원, 고 24만원)	
수련활동비(초·중·고)	실비 지원		

※ 자료 :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 제출 자료

### 3.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충청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 갈등으로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교육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은 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정책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9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조(갈등영향분석),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제11조(갈등관리 지침), 제12조(갈등관리 실태 점검 등), 제13조(수당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제4조(갈등영향분석)는 제9조 제5호와 동일
-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는 제9조 제6호와 동일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제8조(협의 결과문 작성 및 이행), 제10조(비밀유지), 제14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435,690천원으로 연평균 87,13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9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갈등관리 지침, 갈등관리 실태 점검, 조정협의회 등의 비용
  - 2021년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실 갈등관리 관련 예산 준용
  - 갈등관리 지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은 5년마다 실시 전제
  - 갈등영향분석은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관련 비선호시설 갈등영향분석 용역」 비용 준용
- 조례안 제7조, 제13조에 따른 조정협의회 비용
  - 위원회는 반기별 1회(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
  - 협의회는 위촉위원 15명, 공무원 5명 총 20명으로 구성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435,690천원(연평균 87,138천원)

- 산출방식  $\sum_{i=1}^5$  (갈등관리 전문가 활용 및 실태 점검 등 비용)<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전문가 자문·참여	제9조	10,500	10,500	10,500	10,500	10,500	52,500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40,140	-	-	-	-	40,140
	갈 등 영 향 분 석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갈 등 관 리 지 침	제11조	16,050	-	-	-	-	16,050
	실 태 점 검	제12조	20,300	20,300	20,300	20,300	20,300	101,500
	수 당 및 여 비	제13조	5,100	5,100	5,100	5,100	5,100	25,500
	소계(b)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총 비용(b-a)			132,090	75,900	75,900	75,900	75,900	435,690

- 연간비용 ≍ 87,138천원

- 자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갈등영향분석: 45,688천원
- 매뉴얼, 지침 작성: 16,050천원
- 실태 점검: 20,300천원
- 협의회 운영: 5,100천원(참석수당 + 여비)

○ 갈등조정협의회 비용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5,100	-
참석수당	4,500	150천원 × 15명 × 2회 = 4,500천원
여비	600	20천원 × 15명 × 2회 = 600천원

※ 지급대상 : 위촉직 위원 15명

※ 참석횟수 : 반기별 1회(연 2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 [기본료(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19,400원(왕복), 대전~내포: 17,600원(왕복)]

## 4.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1호)

### ① 제정 개요

- 학생들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이해시켜 건강한 입양문화 정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반편견 입양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교원의 반편견 입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6조)
  -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 ②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제6조(교원 연수)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 제2호에 따른 반편견 입양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은 대상과 규모가 구체적이지 않아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에 따른 반편견 입양교육 교원연수는 충청남도교육연수원 연수과정(양성평등, 인권, 다문화사회 이해 등)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4조(반편견 입양교육 기본 계획), 제7조(위탁·위촉 등), 제8조(지원), 제9조(협력체계), 제10조(표창)는 비용 발생과 무관

### ③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④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238,520천원(연평균 약 47,704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38,520천원으로 연평균 약 47,704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에 따른 교재 개발 비용
  - 교재 개발은 1차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의 ‘도서개발’ 비용 준용
  - 교재 수정보완은 2차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 과정과 ‘인정도서수정보완’ 비용 준용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238,520천원(연평균 47,704천원)

- 산출방식  $\sum_{i=1}^5$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sub>i</sub>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교재 개발 및 수정보완 (안 제5조 제1호)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소계(b)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 총 비용(b-a)			89,720	37,200	37,200	37,200	37,200	238,520

## ○ ‘초등사회과지역화교재개발’ 비용 (2021년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본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교재 개발 비용	계	89,720	
	일 반 수 용 비	70,000	20,000원 × 70종 × 50회 = 70,000천원
	개 발 수 당	16,000	50,000원 × 16명 × 20회 = 16,000천원
	여 비	2,880	60,000원 × 16명 × 3일 = 2,880천원
	협 의 회	840	20,000원 × 14명 × 3회 = 840천원

## ○ ‘인정도서수정보완’ 비용 (2021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 본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인정도서수정 보완 비용	계	37,200	
	일 반 수 용 비	3,200	20,000원 × 16종 × 10회 = 3,200천원
	개 발 수 당	28,000	50,000원 × 28명 × 20회 = 28,000천원
	여 비	4,200	60,000원 × 14명 × 5일 = 4,200천원
	협 의 회	1,8600	20,000원 × 18명 × 5회 = 1,800천원



# Ⅲ

## 위원회별 미첨부사유서 2호 ·비대상사유서 작성 사례

1. 의회운영위원회
2. 기획경제위원회
3. 행정자치위원회
4. 복지환경위원회
5. 농수산해양위원회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7. 교육위원회



## 1 미첨부사유서 2호 목록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	21. 1.15.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	21. 2. 1.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훈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3	21. 2. 3.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	21. 2.16.	충청남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5	21. 2.16.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6	21. 2.2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재요청)	한영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	21. 3. 2.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8	21. 4.21.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9	21. 5.24.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10	21. 6.22.	충청남도 농산어촌 체험교육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11	21. 7.27.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계양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2	21. 8. 9.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교육위원회
13	21. 8.23.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인철 의원	교육위원회
14	21. 8.24.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5	21. 9. 9.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6	21. 9. 16.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7	21. 9. 16.	충청남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8	21.10.13.	충청남도 포장재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득응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19	21.10.14.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이공희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20	21.10.28.	충청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태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21	21.11. 2.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2	21.11. 2.	충청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3	21.11. 2.	충청남도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4	21.12.16.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훈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2 비대상사유서 목록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	21. 1. 6.	충청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명숙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	21. 1. 7.	충청남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	21. 1.13.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4	21. 1.13.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5	21. 1.22.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6	21. 1.26.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7	21. 1.27.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	21. 2. 2.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9	21. 2. 2.	충청남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한영신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0	21. 2. 4.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1	21. 2. 8.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2	21. 2. 9.	충청남도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3	21. 2.10.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공 이순신 장군 정신계승 조례안	조철기 의원	교육위원회
14	21. 2.17.	충청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5	21. 2.17.	충청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6	21. 2. 17.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7	21. 2. 17.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18	21. 2. 22.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유전자변형식품등(GMO)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19	21. 3. 3.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20	21. 3. 3.	충청남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형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1	21. 3. 4.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2	21. 3. 4.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인철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3	21. 3. 5.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4	21. 3. 9.	충청남도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익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25	21. 3. 9.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계양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6	21. 3. 10.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27	21. 3. 1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28	21. 3. 11.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29	21. 3. 16.	충청남도 조사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30	21. 3. 23.	충청남도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기서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31	21. 4. 12.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32	21. 4.21.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33	21. 4.21.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만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4	21. 4.21.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5	21. 4.21.	충청남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6	21. 4.21.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37	21. 4.21.	충청남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38	21. 4.21.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39	21. 4.22.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0	21. 4.26.	충청남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옥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1	21. 4.26.	충청남도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인환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2	21. 5. 3.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43	21. 5. 6.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방한일 의원	교육위원회
44	21. 5. 6.	충청남도 당뇨병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5	21. 5. 6.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46	21. 5.10.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7	21. 5.10.	충청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48	21. 5.12.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이계양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49	21. 5.12.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복만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50	21. 5.1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희 의원	교육위원회
51	21. 5.12.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화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52	21. 5.14.	충청남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53	21. 5.17.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54	21. 5.17.	충청남도 금연실천 촉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김동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55	21. 5.18.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56	21. 5.21.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요청)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57	21. 5.24.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58	21. 5.24.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득응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59	21. 5.27.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정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0	21. 5.27.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철상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61	21. 5.28.	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62	21. 6. 7.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익현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63	21. 6.11.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서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64	21. 6. 8.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65	21. 6. 9.	충청남도 충남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한영신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66	21. 6.14.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67	21. 6.15.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정광섭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68	21. 6.2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승만 의원	교육위원회
69	21. 6.24.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방한일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0	21. 6.24.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금봉 의원	교육위원회
71	21. 6.25.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	김명숙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2	21. 7. 5.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육성 조례안	김대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3	21. 7. 8.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74	21. 7.1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75	21. 7.26.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76	21. 7.26.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김영수 의원	교육위원회
77	21. 7.27.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교육위원회
78	21. 7.27.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79	21. 7.29.	충청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안장현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80	21. 7.30.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81	21. 7.30.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82	21. 7.30.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승재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83	21. 7.30.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홍재표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84	21. 8. 5.	충청남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	방한일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85	21. 8.10.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	이영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86	21. 8.10.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한태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87	21. 8.13.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88	21. 9. 3.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김형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89	21. 9.13.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 훈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0	21. 9.13.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공휘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91	21. 9.16.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교육위원회
92	21. 9.16.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김대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3	21. 9.16.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 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94	21. 9.17.	충청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5	21.10. 6.	충청남도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철상 의원	농수산해양위원회
96	21.10. 6.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복만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7	21.10. 6.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안	유병국 의원	교육위원회
98	21.10. 6.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김대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99	21.10. 7.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금봉 의원	교육위원회
100	21.10. 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나 의원	교육위원회

연번	접수일자	의안명	발의자	소관위원회
101	21.10. 7.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석곤 의원	교육위원회
102	21.10. 7.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재표 의원	교육위원회
103	21.10.26.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104	21.11.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05	21.11. 2.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06	21.10.27.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107	21.10.27.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108	21.10.27.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복지환경위원회
109	21.11.12.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110	21.11.22.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행정문화위원회
111	21.12. 9.	충청남도 공무원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안	김옥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12	21.12. 9.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종화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13	21.12.10.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김대영 의원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14	21.12.10.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김대영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115	21.12.17.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형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16	21.12.23.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공휘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117	21.12.24.	충청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영란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 1. 의회운영위원회

## 1.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는 자구 수정 및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신설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 2.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임용권이 확대되는 사항으로, 안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 한도),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7조(수당지급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0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제13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7조(수당지급 등)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의회·충청남도 업무협약’ 제3조(협력분야) 라.(후생복지)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제8조(기본항목), 제9조(자율항목),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기준), 제12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제15조(회의), 제16조(서면심의·의결), 제18조(회계처리의 특례), 제19조(운영의 위탁), 제20조(통합운영), 제21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 2. 기획경제위원회

### 1.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착한기업 인증), 제7조(지원),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착한기업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9조(착한기업 관리)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 및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착한기업 인증), 제7조(지원)는 착한기업 지원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 비용추계 어려움
  - 안 제8조(착한기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는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심의 위원회’에서 대행 전제로 비용추계에서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우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 운영	4,500	3,825	안 제8조

※ 자료 : 세출예산서(일자리노동정책과)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인증의 취소), 제10조(시행 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착한기업 인증 관련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2.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는 대행수수료 요율의 상한선(10% 이내)을 설정한 것으로 각 사업별 대행수수료 요율이 증가할 경우 비용 발생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각 사업별 대행수수료 요율이 증가할 경우 비용발생의 소지가 있으나, 향후 대행사업 수수료 비율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3.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7조(협회의 운영 및 기능)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는 동계획을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 미발생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90,000	1,230,000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1,049,000	1,100,000	제6조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지역특화단지)	-	100,000	
농공단지협의회 활성화 지원	41,000	30,000	제7조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생산 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제8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 4.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11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 등)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6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11조는 데이터정책관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1,047,017	1,473,938	
Open API 구축 및 운영	-	239,305	
통신/카드소비 등 민간데이터 구매	-	212,500	
빅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	2,340	2,210	
빅데이터 교육 추진	540	9,550	
빅데이터 용역사업 평가 수당	6,136	7,750	
충남형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능개선	1,000,000	315,123	
빅데이터 과제 분석	38,001	475,000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인프라 보강(HW, SW)	-	212,500	

※ 자료 : 2020~2021년 예산서(세부사업 부기명 기준)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적용범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데이터활용 실태조사),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2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데이터관리체계의 구축),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15조(사무의 위탁), 제16조(데이터 실태 점검·평가 등), 제17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보급 등), 제18조(포상), 제19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3. 행정문화위원회

#### 1.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4조(추진계획), 제6조(지원), 제8조(교육)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홍보),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제4조(추진계획)는 문화유산과에서 자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제6조(지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제8조(교육)는 교육에 대한 대상, 규모 및 범위 등의 계획이 미 수립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2.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재향경우회에 관한 조례안 제3조(사업)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지원에 대한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곤란
- ※ 참고 : 인천광역시의 경우 연 31,960천원(시비 29,000천원, 자부담 2,960천원)지원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청소년 선도 활동, 순직경찰관 참배 등 사업 추진)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지원), 제5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지원신청 등), 제7조(준용),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3.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게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사업), 제6조(게임산업 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 의 사업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정책과에서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계		4,137,183	조례안
문화정책과	충남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사업	4,100,000	제5조 제6조 제7조
	충남e스포츠대표 선발전 사업	7,183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충남글로벌게임센터 숙소지원)	30,000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게임산업 중·장기 기본 계획), 제8조(재정지원),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추계와 무관

### 4.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대상사유서)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4호에서 시설개선·환경정비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에서 기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문화유산과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1,489,150	안 제4조제4호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6조(준용), 제7조(교부 결정 취소 등)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문구를 추가함에 따라 비용 발생과 무관

## 4. 복지환경위원회

### 1.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지원방법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이 발생
  - 다만,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조례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지원대상), 제6조(지원 신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제9조(비밀준수 등), 제10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는 비용 발생과 무관

### 2.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2호)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2항 제11호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건강증진식품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액 (2021)
건강증진식품과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	65세 이상 우울 독거노인 및 자살취약군 정서지원 및 멘토링 집중관리로 자살 예방환경조성	1,700,000

- 조례안 제6조(위원회 설치·운영) 제3항 제3호, 제4항,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제2항,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시행규칙)는 신설 및 조문 변경, 본문 자구수정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3.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소관부서인 보건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수립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 안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제6조(재정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보건정책과 기추진 사업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2021)	비고
	계	22,626	
보건정책과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17,000	안 제5·6조
	위해 의약품 등 검체 수거비	2,776	
	위해 의약품 등 검체 수거비(자체)	2,850	

※ 출처 : 보건정책과 제출자료( 2021. 8. 13.)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7조(홍보),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제9조(시행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4.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대상사유서)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충청남도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는 상위법인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아니함
- 조례안 제5조(수수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수수료 납부 시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함

## 5. 농수산해양위원회

### 1.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책무),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절차), 제8조(준용), 제9조(평가 및 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은 사업규모, 대상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책무), 제6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절차), 제8조(준용), 제9조(평가 및 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자구 수정, 조문 변경 등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한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은 사업규모, 대상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3.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 제5조(위원회 설치), 제6조(육성사업 지원), 제7조(컨설팅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제3조, 제4조는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자체 수립 및 조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5조는 기존 지역특화작목육성위원회와 통합 운영, 심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비용추계 제외
  - 제6조, 제7조는 농업기술원에서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

##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0년	2021년	
계		444,919	431,172	
원예연구과	충남 선별 아열대작물 안정생산 재배기술 확립	176,050	173,298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제6조)
	기후변화 대응 사과 일소 및 동녹 경감기술 개발	49,000	36,000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개발(제6조)
기술보급과	아열대과수 경쟁력 강화 시범	60,000	90,000	최고품질 원예작물 생산 기술 보급(제6조)
역량개발과	전문 농업인교육	103,075	77,394	농업인 실용교육 운영 (제7조)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	18,794	16,480	ICT 스마트팜 활용기술 교육(제7조)
과채연구소	박수박·피수박 발생 경감을 위한 재배 관리 기술	20,000	20,000	과채 신품종 육성 (제6조)
양념채소연구소	생강 고온기 차광 및 배토재배 기술 개발	18,000	18,000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제6조)

※ 주 : 사업명은 2021년 농업과학기술연구개발 연구사업과제계획서(충청남도농업기술원) 상 연구과제명 또는 부기명(세부내역)으로 작성, 비고란은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기재

※ 자료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4.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안 제4조 제1호, 제2호, 4호의 경우, 소관부서인 농업기술원에서 관련 사업을 기 추진 중이므로 비용추계 제외
  - 안 제4조 제3호(육종연구단지 조성), 제5호(채종농가 기반시설 지원), 4호(보험가입 지원)의 경우, 사업 규모·대상 등에 대한 계획이 미수립되어 비용추계 곤란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2021년	
계		7,222,392	
농업기술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보급	937,215	조례안 제4조 제1호
	농업기술보급사업 활성화 지원	43,873	
	벼 품질 고급화 기술개발	139,500	조례안 제4조 제2호
	간척지 적응 사료용 벼 품종 선발	49,075	
	벼섯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75,958	
	과채 신품종 육성	394,843	
	딸기 신품종 육성	450,117	
	화훼 신품종 육성	440,063	
	양념채소 신품종 육성	245,772	
	고품질 인삼약초 생산기술 개발	315,240	
	구기자 신품종 육성	314,000	조례안 제4조 제4호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62,039	
	양념채소 우량종구 생산 보급	119,796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인삼)	1,120,000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구기자)	112,000	조례안 제4조 제6호
	재해대응 기술지원	725,985	
	벼 우량종자생산	277,125	조례안 제4조 제7호
	우량 씨감자 생산 및 연구	402,174	
	우량종자 생산 및 연구	482,846	
	수도용 보급종생산	222,621	
	우량잡종 생산 보급 및 연구활동 지원	292,150	

- 조례안 제5조(신품종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제6조(공무원 교육 및 부담경감)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5조는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6조에 따른 신품종 및 종자증식 관련 교육은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함에 따라 비용 미발생
- 안 제4조, 제5조,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조례안 시행에 따라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6.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1.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기증), 제6조(예산), 제7조(시행 규칙)는 비용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제4조(소방유물의 관리)는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비용 추계 곤란

### 2.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지원사업), 제8조(특화거리 사업 평가)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7조, 제8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제7조(지원사업)는 지원사업 대상과 금액, 제8조(특화거리 사업평가)는 사업평가 세부기준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

### 3.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등의 설치),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제7조(재난 방송시설 설치 대상 및 지원), 제8조(교육·훈련 등)에 따라 비용발생
- 다만, 조례안 제5조, 제6조의 경우 충청남도 소관부서에서 동 사업을 기추진함에 따라 비용추계 제외

기 추진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2020년	2021년
계		46,000	34,950
자연재난과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12,000	12,000
	충청남도 재난안전포털 및 모바일앱 홍보	18,000	15,300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16,000	7,650

- 제7조 제2항에 따른 재난 방송시설 설치와 운영비 지원은 대상과 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1~7호의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라 재난 방송시설 설치·운영)
- 아울러, 제8조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 관리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도 대상이 불명확하여 비용추계 곤란

### 4.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대상사유서)

○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옥외행사의 범위를 체육 및 체육활동까지 확대·신설

둘째, 적용범위를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

셋째,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

넷째, 옥외행사시 안전관리계획과 변경계획의 신고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

## 7. 교육위원회

### 1.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금액·기준 등이 미확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 2. 충청남도교육청 물품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미첨부사유서 2호)

#### 가. 비용발생 요인

-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사용)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

#### 나.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다.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비용추계 곤란

### 3.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5조(금융교육 표준안 마련),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제7조(교원연수 지원)에 따라 비용 발생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교육위원회에서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조례안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 발생과 무관

### 4.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비대상사유서)

#### ○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체육진흥법’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12조(수당 등의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체육건강과에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
    - ※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2015. 12. 18 훈령 제194호)
- 조례안 제2조, 제12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용발생과 무관





## 부 록

### (조례안비용추계 관련 규정)

1.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2.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 2020-06-10 조례 제 4724호  
 (일부개정) 2021-07-20 조례 제 4968호  
 (일부개정) 2022-02-10 조례 제 5177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규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충청남도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충청남도민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례·규칙을 말한다.
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4. “입법예고”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비용추계서”란 자치법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 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기본원칙)** 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자치권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을 할 때에는 일반 도민과 이해관계 있는 도민 및 단체,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의 입법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뜻을 가진 단어와 어법에 맞는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입법안 작성 및 의견 수렴

**제4조(입법안 작성)** ①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면밀한 분석·검토에 기초할 것
-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대상이 되는 도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규범으로서 실효성을 가질 것

2. 입법의 적법성 및 적정성

-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나.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을 것

3. 표현의 명확성

- 가. 입법의 내용과 의미가 명확하여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표현할 것
- 나.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 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②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법안 작성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입법 이유
- 2. 주요 내용
- 3. 신·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정한다)
- 4. 관계법령 발췌내용
- 5. 예산조치 사항

**제5조(사전 협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기 전에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6조(입법예고 대상)**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2.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도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치법규의 제명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해당 입법 예고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를 따른다.

**제11조(입법안 심사)** ①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발의하는 입법안은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2.10.〉

②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비용추계서 작성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자치법규 입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2.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대상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2.2.10.〉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7. 20.〉
3. 상위법령 개정 또는 기관·조직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단순한 자구 수정인 경우 〈신설 2021. 7. 20.〉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21. 7.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조례안이 수정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수정한 자치법규 입법안과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에 관하여는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13조(작성방법 등)**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지사가 제출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할 수 있다.

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1. 7. 20.>

④ 비용추계 기간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시행일부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에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14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 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1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 비용추계서 작성은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의원·위원회가 자치법규 입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도의회 예산정책담당 부서를 소관부서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2.2.10.>

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심의회 상정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2.10.>

③ 삭제 <2022.2.10.>

## 제4장 자치법규의 공포 및 시행

**제16조(전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함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뜻을 적어 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2.2.10.>

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도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22.2.10.>

**제17조(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③ 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 <개정 2022.2.10.>

**제19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자치법규를 게재한 도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0조(시행일)** ①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도지사는 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규칙을 입법예고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관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규칙이 법령 또는 조례의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장 자치법규의 교육 및 정비

**제22조(자치법규 교육 등)** 도지사는 입법된 자치법규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는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자치법규 정비)**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입법 후 오랜 기간 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3.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끼치는지 여부
4.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지 여부

**제24조(입법의견 제출)** ① 삭제<2022.2.10.>

② 삭제<2022.2.10.>

③ 삭제<2022.2.10.>

## 제6장 삭제<2022.2.10.>

제25조 삭제<2022.2.10.>

## 제7장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의견 제출<신설 2022.2.10.>

**제26조(규칙의 제정 등 의견제출)** ① 주민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7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본조신설 2022.2.10.]

**제28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 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29조(의견제출서 보완요구 등)** ①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견 제출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28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를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0조(의견제출 검토)** ①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을 검토하고,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검토를 생략한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2. 의견제출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본조신설 2022.2.10.]

**제31조(의견의 반영)** 도지사는 의견제출 소관부서의 장이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2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도지사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3조(개인정보 보호 등)** 의견제출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2.10.]

**제34조(포상)**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이 입법안에 반영되어 도의 정책 개선 또는 재정 증대에 이바지하는 등 도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0.]

## 부 칙(조례 제4724호 2020.6.10.)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충청남도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부 칙(조례 제4968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177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대상

나. 추계의 전제

다. 추계 결과

라. 재원조달 방안

3. 기타 협의사항 등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0000년)	2차년도 (0000년)	3차년도 (0000년)	4차년도 (0000년)	5차년도 (0000년)	계
세 입							
△△△△							
△△△△							
△△△△							
세 출							
△△△△							
△△△△							
△△△△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12조제2항 중 제○호 등)

##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 4.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별지 제3호 서식]

#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근거

## 2. 작성자

작성자	〈예시 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 〈예시 2〉 충청남도 ○○○실(국) ○○○○과장 ○○○
연락처	(041) 000- 0000

[별지 제4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 (제28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	성명 <span style="float: right;">[ ] 대표자</span>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 표시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 인원: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부 록 (조례안 비용추계 관련 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검토결과서 (제30조제1항 관련)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제출일자
제출의견	
주관부서 및 검토자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규칙명	(현행 규칙이 있을 경우 기재)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수용 여부 및 사유 등 작성)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의회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20-07-10 의회훈령 제 62호  
(일부개정) 2021-08-03 의회훈령 제 6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 의원 또는 위원회에서 의뢰하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제2조(비용추계 의뢰)** 의원 또는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이하 “예산정책담당관”이라 한다)에게 비용추계를 의뢰한다. <개정 2021. 8. 3.>

**제3조(비용추계 작성의 객관성 유지)** 비용추계 작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 내용 협의)** 예산정책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의뢰자와 비용추계 내용에 관하여 설명, 의견교환 등의 방법으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제5조(비용추계 처리기간)** ①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또는 비대상 사유서는 14일 이내에 처리한다. <개정 2021. 8.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 내용이 복잡하거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련자료 요청)** 예산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제7조(비용추계결과 송부 등)** ① 예산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가 완료되면 공문으로 의뢰자에게 비용추계결과를 송부한다. <개정 2021. 8. 3.>

② 예산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결과를 송부한 후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의뢰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제8조(비용추계 의뢰 철회)** 비용추계 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예산정책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

**제9조(자료의 관리)** 예산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비용추계 의뢰 및 회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3.>

### **부 칙(훈령 제62호 2020.7.1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훈령 제65호, 2021.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안비용추계 의뢰서

## 의안비용추계 의뢰서

수 신 : 예산정책담당관

참 조 : 예산분석팀장

의안명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라 ○○안  
비용추계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요구 의원·위원회 :

(인)

[별지 제2호 서식] 의안비용추계 철회서

## 의안비용추계 철회서

수 신 : 예산정책담당관

참 조 : 예산분석팀장

의안명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장 비용추계서 작성에 따라 의뢰한  
○○안 비용추계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요구 의원·위원회 :

(인)

## 2021년 의원 발의 조례안 비용추계 사례집

---

2022년 4월 일 편집

2022년 4월 일 인쇄

발 행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TEL : (041) 635 - 5207

총 괄 : 예산정책담당관 한 태 식

기획·조정 : 예산분석팀장 박 종 철

작 성 : 주 무 관 오 인 선  
주 무 관 최 병 철  
주 무 관 허 미 숙  
주 무 관 김 현 겸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의회사무처(1층)

---

